

대신 성장 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주식](펀드코드: AI632)

투자 위험 등급 :
1 등급(매우 높은 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대신 성장 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신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 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집합투자업자

대신자산운용 주식회사 (☎02-769-3233)

모집(판매)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수익증권[10조좌]

효력발생일

2016.03.28.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asset.daishin.com),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고

종류(Class)

A

A-e

C1

C-e

가입자격

제한없음

온라인가입자

제한없음

온라인가입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이내

납입금액의
0.5%이내

없음

없음

후취판매수수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환매수수료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 전환수수료 | | 해당사항없음 | | | |
|--------------|--------|---|--------|--------|--------|
| 보수 (연, %) | 판매 | 0.70 | 0.35 | 1.45 | 0.50 |
| | 운용 등 | 집합투자업자 : 0.70, 신탁업자 : 0.03, 일반사무관리회사 : 0.02 | | | |
| | 기타 | 0.0020 | 0.0014 | 0.0022 | 0.0019 |
| | 총보수·비용 | 1.4520 | 1.1014 | 2.2022 | 1.2519 |
| ※ 주식사항 | | <p>주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4.06.24 ~ 2015.06.23]</p> <p>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4.06.24 ~ 2015.06.23]</p> <p>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p> <p>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p> <p>주5)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전환수수료는 전환시 부과되며, 보수는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은 사유발생 시 지급)</p> <p>주8)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위 클래스외에 C2,C3,C4, C-F, C-P, C-P2 클래스는 생략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주9) 이연판매보수(CDSC) 적용기준은 Ⅲ.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중 '2. 전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참조</p> | | | |

| 매입 방법 | · 15시 이전 : 2영업일 기준가 매입 · 15시 경과 후 : 3영업일 기준가 매입 | 환매 방법 | · 15시 이전 : 2영업일 기준가로 4영업일 지급 · 15시 경과 후 : 3영업일 기준가로 4영업일 지급 |
|-------|--|-------|--|
| 기준가 | <p>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p>※ 펀드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p> | | |
| | <p>공시장소</p> <p>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asset.daishin.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p> | | |

II. 집합투자기구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입니다.

※ **비교지수: [KOSPI 대형지수 X 40%]+[KOSPI 중형주지수 X 60%]**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재무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중소형주에 투자합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형주를 편입하여 중소형주로 대체 할 수 없는 산업이나 종목에 투자하여 변동성 축소 및 초과 수익을 추구합니다.

(1) 포트폴리오 투자대상

- 원 칙 : 중소형주에 투자
- 중소형주의 정의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주식을 중소형주라 합니다. 다만, 주식의 편입시점에는 중소형주에 해당하였으나 편입이후 중소형주에 해당하지 않게 된 종목은 중소형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편입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의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
 - 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목중 편입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00에 해당하는 종목보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 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2의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종목

(2) 포트폴리오 운용전략

- 1) 국정과제 및 정책 테마 관련 중소형 주식에 집중 투자합니다.
 - ① 중소, 중견기업 육성 정책, 여성고용 확대 및 육아지원, ICT와 의료 통합 등 정부 정책 관련 핵심 기업에 투자
 - ② 정책을 통한 생산 및 소비 트렌드(유행) 변화에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기업.
 - ③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SW), 문화콘텐츠 산업을 통한 내수와 서비스업 성장 관련 기업.
 - ④ IT 및 통신에서 다른 산업으로 확산을 통해 성장하는 컨버전스형 기업에 투자.
 - ⑤ 인구구학적 생산 및 소비 트렌드(유행) 변화 관련 기업에 투자.
- 2) 구조적인 성장성을 보유한 중소형주에 투자합니다.
 - ① 신성장 동력 산업의 매개가 되는 기술을 보유하거나, 원재료를 생산하며 가격 경쟁력을 가진 신성장동력을 보유한 기업
 - ② 높은 시장 지배력(브랜드 밸류)를 가진 기업으로 장기 불황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 ③ 트렌드(유행) 변화(시대정신, 정부정책, 소비패턴)에 따른 구조적인 성장 기업
 - ④ 변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는 기업

※ **비교지수: [KOSPI 대형지수 X 40%]+[KOSPI 중형주지수 X 60%]**

※ KOSPI 대형지수 및 KOSPI 중형주지수는 한국거래소(KRX)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지수로(www.krx.c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3. 운용전문인력 (2016.03.28. 기준)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구수 | 다른 운용 자산규모 | |
| 김종연 | 1984 | 책임 운용역 (팀장) | 2개 | 402억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10.03 ~ 11.04 액센츄어코리아 애널리스트 11.05 ~ 12.07 유리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15.01 ~ 현재 대신자산운용 리서치 본부 16.01~현재 대신자산운용 리서치운용2본부 |

- 주1)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리서치운용2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3)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 주4) 상기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투자실적 추이

■ 연도별 수익률추이(세전기준)

(단위:%)

| 기간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4년 | 최근 5년 |
|---------|-------|-----------------------|-----------------------|-----------------------|-------|
| | | 15.03.11 ~16.03.10 | 14.03.11 ~15.03.10 | 13.06.24 ~14.03.10 | |
| Class A | 0.07 | 18.65 | 5.84 | | |
| 비교지수 | 5.38 | 4.96 | 6.41 | | |

- 주1) 비교지수 : [KOSPI 대형지수 X 40%]+[KOSPI 중형주지수 X 60%]
-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4) 전체 종류 수익증권 중 대표 종류 수익증권 Class A(선취판매수수료 부과)만 작성되었고 기타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주요 투자위험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 |

| | |
|--------------|--|
| | <p>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p> |
| 종목위험 | <p>집합투자증권, 주식, 채권 등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의 가치는 해당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p> |
| 주식가격 변동위험 | <p>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p> |
| 시장위험 | <p>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계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
| 채무불이행 위험 | <p>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자한 채권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해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아울러 채권의 이자와 원금 등에 대한 회수완료 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p> |
| 이자율 변동위험 | <p>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에 의한 채권가격 하락으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
| 투자신탁 해지위험 | <p>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p> |
| 코넥스 시장 투자 위험 | <p>이 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일부를 제3시장인 코넥스(Korea New EXchange: KONEX) 시장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결여로 인하여 투자자산의 가치 하락 및 환매가 연기 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넥스 시장은(KONEX)은 초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쉽게 해주기 위하여 개설된 제3의 주식 시장으로서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 비하여 투자위험이 더 크고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동성(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p> |

※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위험 **5등급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익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시장 하락에 따른 원본 손실 및 시장 변동성 등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위험수준을 이해하면서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주1)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위험관리

- 1) 투자자산간 또는 투자자산내에 분산투자 및 손절매 제도 시행으로 투자위험을 관리합니다
- 2) 재무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중소형주 발굴을 통해 주기적인 포트폴리오 재구성과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입니다.
- 3) 적극적인 자산배분을 지양하고, 시장상황을 고려해 탄력적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 4) 대형주 편입비중을 통해 변동성을 줄이고 위험분산 투자 효과를 추구합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III.

집합투자기구 기타정보

(1) 과세

| 과세대상 | 과세원칙 | 세율 | 과세시기 |
|------|--|-----------------------------|------------|
| 투자신탁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 | - |
| 수익자 | 원천징수 원칙 단, 개인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 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개인,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포함) | 이익을 지급받는 날 |

< Class C-P 수익증권 가입자: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lass C-P 2 수익증권 가입자: 퇴직연금계좌의 세제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1. 이연판매보수(CDSC) 적용기준 및 내용

- C1클래스를 가입한 투자자는 1년 이상 경과시 C2클래스→C3클래스→C4클래스로 자동 전환 됩니다. 참고로 C2클래스, C3클래스, C4클래스의 경우에는 최초가입이 불가능한 전환형 클래스로 투자자는 C1클래스로만 최초가입이 가능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대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 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 중 1. 재무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asset.daishin.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asset.daishin.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asset.daishin.com)
-